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」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“저소득 노인계층”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“사하구”라 한다)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중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로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를 말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조 (정 의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.....<u>납부자를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지원대상)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“공단”이라 한다) 사하구 지역 가입자에 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“공단”이라 한다) 사하구 지역 가입자에 한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</p>
<p>제5조(대상자 선정) 공단은 제3조의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대상자 선정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.....<u>사하구청장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※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